

○ 안건

- 부친의 사망(2022년 7월 28일) 이후 남매(오빠, 동생)가 상속인 (모친은 약 12년전 사망)
- 오빠는 부친이 2010년 9월 촬영한 유산 관련한 동영상을 근거로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

○ 유언 내용

유산	아들	딸
골프장 회원권	○ (부친 사전 증여)	X
선산 필지	○(부친 사전 증여)	X
선산이 수용된 채권의 현금화	X	○
당시 거주 아파트	X	○ (모친 명의 아파트로 딸이 12년전 상속받음)
부동산(꼬마빌딩)	○	X
잔여 현금(유고시)	1/2	1/2

○ 상황

- 딸은 미혼으로 모친, 부친을 부양하면서 같이거주하다가 모친은 12년전, 부친은 올해 사망
- 아들한테 남긴 부동산은 현재 공시지가로 약 28억원이고, 딸한테 남긴 채권은 약 7억 5천만원
- 유언을 남길 12년 전 당시에 부친은 추후에 딸이 유류분 청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 유고 시 대략 건물 시세(공시지가 X)를 28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딸한테 1/4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서는 7억원 정도의 계산이 나옴
-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건물 시세는 많이 올랐고(아직 시세는 모름), 딸한테 주겠다고 한 채권은 현금화를 해서 부친이 생활비조로 약 10년에 걸쳐서 주었기 때문에 추후에 사전증여 조사를 받을 확률도 존재함
- 현재 아들은 상속협의서에 딸이 빨리 도장을 찍게끔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

○ 질문

- 부친이 남긴 12년전의 동영상은 진짜가 맞지만 그 후 상황도 변하고 딸이 12년을 모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한지요? 동영상이 진짜라면 여기서도 유류분밖에 주장할 게 없는지요?
- 유류분을 산정할때는 10년 이상이 된 시점에 오빠가 증여받은 것은 산정안하는지요?
- 딸이 만일 현금화한 채권에 대해 사전 증여로 추징을 받게 되면 자기 몫이 줄어들텐데 이것도

유류분 산정에 감안하는지요?

- 유류분 소송은 상속을 알게된 시점 1년내라고 하는데 동영상 카카오톡으로 받은게 2022년 10월 1일이라고 하면 이 시점부터 1년이내인가요?

- 상속신고 마감일이 2023년 1월 말일인데 제가 앞으로 그 어떤 것에도 협의안하면 법정지분으로 등록이 되는지, 아니면 아들은 그 동영상을 근거로 자기가 공증을 받아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?